

## 결 정

2018 - 2014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2월 19일자 A27면 「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 예방까지~!/세상에 이런일이 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씨엘바이오」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광고는 피부에 좋고, 아토피, 탈모 예방까지 한다는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비누는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 천연유래성분들로만 제조돼 피부보습, 미백, 주름은 물론 아토피, 무좀,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는 비누가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닌데 의학적이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사법」 61조를 어긴 것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